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1.05.06., 개정 2025.02.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현장실습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②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현장실습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 ④ 현장실습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교직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2.17.>

1

제4조 (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현장실습지원팀 직원

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